



소송법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교회재판에도 적용될까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꼽힌다. 더 중한 형을 받게 될까 우려해 상소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에도 명문화돼 있다. 이른바 ‘교회법’이 적용되는 종교기관의 재판 절차에도 이 같은 사회의 법률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고 25-3부(재판장 김용성)는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 A씨가 교단을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감리회 총청연회 소속 B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는데 교회 장로들과 분규가 일어나면서 고소·고발 당해 교회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감리회는 2심제로 재판이 운영되는데 교회 재판의 1심은 지난

해 12월 A씨에 대해 정직 2년을 내렸다. 이후 A씨만 상고해 진행된 2심에선 면직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심보다 무거운 2심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판결을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정직보다 면직이 중한 징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년 정직’은 B교회 담임목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담임목사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담임목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면직’은 다른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



들여 정직 처분을 내린 교회 재판의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상소제도는 원심 재판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이고 그 주된 기능은 원심의 오류를 시정해 피고인의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데 있다.”며 논리를 전개했다. 이어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소를 단념하게 돼 상소제도의 존재이유를 몰각시키게 된다.”며 ‘이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이 상소제도에 적용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이런 원칙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이 형법상 자격형과 유사하며, 고소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해 형사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고,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회 재판에도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이 준용돼야 한다고 했다. “감리회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는 자체 규정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또 “정직보다 면직이 A씨에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직과 면직은 ‘문제되는 해당 직’에서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 기간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가 다를 뿐”이라며 “면직 되더라도 다른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감리회가 A씨의 면직 판결을 선고하고 다른 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출처/경향신문&경향닷컴)